

강북구보건소 · 아주대학교의료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 간

서울특별시 강북구보건소와 아주대학교의료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안전도시 사업 추진 지원 협약을 체결합니다.

안전도시사업 지원 협약서

2016. 2.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강북구보건소장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장

강북구보건소 · 아주대학교의료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을 위한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아주대학교의료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 업무협약

서울특별시 강북구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와 국제안전도시지원 센터인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아주대학교 의료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 (이하“산학협력단”이라 한다))는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보건소”와 “산학협력단”이 국제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정신) “보건소”와 “산학협력단”은 신의와 성실로써 사업의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서로 긴밀하게 협력한다.

제3조(협력사항) ①“보건소”와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서로 협력한다.

1. 강북구 국제안전도시 공인 및 재공인을 위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국·내외 세미나 개최 및 사업 홍보
 3. 사업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조사연구와 이에 관한 정보교환 및 자료제공
 4. 기타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 사항
- ②본 협약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사안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지원사항) “산학협력단”은 “보건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강북구 안전도시 사업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또는 워크숍 개최
2. 강북구 안전도시 연차보고서 관련 자문제시 (각년도)
3. 강북구 안전도시 관련 네트워크 활동 지원 (각년도)
4. 국제안전도시 공인 행정절차 지원

5. 강북구의 현 안전도시 사업 모니터링 및 차기년도 사업방향 수립 자문
6. 국내외 사업 관련 전문정보 제공
7. 기타 국제안전학교 시범학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자문 및 공인(제) 관련 행정절차 지원

제5조(일반규정) ①“보건소”와 “산학협력단”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할 경우 인력·예산 정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②“보건소”와 “산학협력단”은 지원사항외에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수한 사업의 경우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과 정부회계 관련 법규에 의거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③특수사업으로 인하여 습득하는 지식·기술·정보 등은 공유하며 이에 대하여는 상호협의 또는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타인에게 기술료를 징수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제6조(업무지원금) ①“보건소”는 “산학협력단”에게 본 협약과 관련하여 업무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업무지원금은 상호 협의하여 협약 체결기간 동안에 지급하며, 협약 기간 연장 시 매 1년 단위로 추가 지급한다.

제7조(기밀업수의 의무 등) ①“보건소”와 “산학협력단”은 업무상 알게 된 상대방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 기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보건소”와 “산학협력단”은 지식·기술·정보 등의 제공 또는 지원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공개하지 말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유효기간) ①본 협약은 협약서가 서명된 이후 2010년 7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협약의 유효기간은 최초 협약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해지 하지 않을 경우

1년씩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①“보건소”와 “산학협력단”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 시행의 경우 상대방의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이행)“보건소”와 “산학협력단”은 협약 체결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본 협약 에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협약에 관한

일반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정본) 본 협약은 “보건소”와 “산학협력단”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고

각 각 1부씩 보관한다.

제2조(권리 · 의무의 승계 등) 본 협약 당사자의 명칭 · 대표자 등 단순사항의

변동 발생 시에도 협약에 따른 권리 · 의무는 포괄 승계된다.